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# 심 사 보 고 서

'97. 12. 12

기획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'97. 11. 26

○ 회부일자 : '97. 11. 26

다. 상정일자 :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

○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 ('97. 12. 12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기획관리실장 : 김 동 기)

### 가. 제안내용

- 각종 인·허가 등 행정처분시 의무적으로 첨가 소화하는 지역개발공채를 '98년도부터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「등록발행제도」를 도입함으로써,
- 실물증권 거래에 따른 인적·물적·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매각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지역개발공채의 발행·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에 등록하여 (조례제4조제2항)
- 기금융자절차및 상환방법명문화(조례제10조의2, 제10조의3)
  - 용자금 수령시 차용금증서와 영수증 제출
  - 용자금상환 지체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입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태 인)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충청북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재정 운영해 오던중 지역개발공채의 실물증권거래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첫째, 지역개발공채의 발행,유통 및 원리금 상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하고 (안제 4조제2항)

둘째, 기금 용자절차 및 상환방법을 명문화 (안제10조의2,3)하여 용자금 수령시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토록 하고 용자금 상환지체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입하는 것으로 하는 등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,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 4명, 찬성 4명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-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
- 신·구조문대비표